

오현적환장 지하화 등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5. 12.



강북구

목 차

제 1 장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범위
5. 과업 예정 공정표

제 2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설계변경조건
3. 과업중지 및 과업기간 연장
4. 보안사항
5. 기타 유의사항

제 3 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 도시계획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의 작성 및 제출
2. 성과품 제출 목록

제 1 장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오현적환장 지하화 등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 현재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오현적환장은 현부지가 “북서울 꿈의 숲” 인근에 위치하여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인근 거주민의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적정규모의 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본 과업은 오현적환장을 “북서울 꿈의 숲”과 연계한 친환경적인 청소 업무시설로 조성하여 강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경제적 처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적환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또한, 오현적환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조성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중복결정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03 일원(부지면적은 기본계획시 확정)

나. 시설 규모(시설구조 및 규모는 기본계획시 확정)

- 적환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 지상화의 경우 : 돔형 적환장
 - 지하화의 경우
 - ▶ 지상 주차장(청소차량 및 일반차량) / 지하 적환장
 - ▶ 지상 주차장(일반차량) / 지하 주차장(청소차량) 및 지하 적환장
 - ▶ 지상 공원 / 지하 주차장(청소차량 및 일반차량) 및 지하 적환장

- 생활쓰레기 압축적환시설 00톤
- 목재 파쇄시설 00톤
-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적환시설 00톤
- 폐토사 적환시설 00톤
- 청소차량 계근대
- 강북구 관내 이전할 기타 시설물 1식

다.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4. 과업의 범위

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자연환경 및 지역현황 조사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검토
- 관련 상위계획 검토
- 관련법규 검토

(2) 현황 조사

- 지형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관련 자료는 기존자료 활용
 - 지형현황측량 : 사업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측량 자료 활용
 - 토질조사 : 북서울 꿈의 숲 조성공사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2008. 10.) 활용
 - 현재 운영 중인 적환장의 현황 조사
 - 국내 타지자체의 유사시설 현황 조사
-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사업부지의 입지 분석
- (5) 처리시스템 검토 및 처리시설 규모 산정
- (6) 기본계획 수립
- (7)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 (8) 공사 중 현 오염환경의 안정적 운영방안 검토
- (9) 사업 추진방식 검토 및 경제성 분석
- (10) 기타 필요한 사항(투자심사 시 관련 서류 작성 등)

나. 도시계획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 (1)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 (2) 환경성 검토
-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4) 교통성 검토
- (5) 경관성 검토

※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포함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과업 예정 공정표

구 분	공 정	계약일로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2) 현황 조사		■							
	3)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사업부지의 입지분석		■							
	5) 처리시스템 검토 및 처리시설 규모 산정		■							
	6) 기본계획 수립			■						
	7)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				
	8) 공사 중 현 적환장의 안정적 운영방안 검토			■						
	9) 사업추진방식 검토 및 경제성 분석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중복결정)				■					
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제 2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강북구 오현적환장 지하화 등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 예정 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과업진척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과업 중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15일 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회시 도출된 사항은 차기 절차이행 시 반영여부를 보고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및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마. 본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용역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처가 제공할 경우에는 용역수행자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고회, 최종 보고회, 시·구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시·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개최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주민복리 증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며, 발주처의 의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사.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법 · 령 · 규칙 등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 전에 각종 보고서, 변경결정도면,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절차이행 등의 임무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행하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결정에 만전을 기한다.
- 아. 수급인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필요한 모든 협의내용을 발주처가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자. 본 과업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었던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관련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카. 수급인은 제출한 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 손실, 기타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본 과업수행 중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2. 설계변경 조건

-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나. 실제 작업의 물량이 변경될 때
-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라. 과업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내용에 따라 내역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마.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변경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중지 및 과업기간 연장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및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른 추가 비용청구를 할 수 없다.

나. 다음의 경우에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의 변경 및 계속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진행중 또는 완료 후 제출한 용역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기술되는 모든 도서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 지침 및 규정, 기타 관련 법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설계를 위한 충분한 지침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세부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1) 자연환경 조사 (위치, 지형 및 지질, 기상, 하천 및 수계 등)
- (2) 인구현황 및 장래 추정
- (3) 도로 및 교통현황
- (4) 토지이용현황 및 관련 계획
- (5)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 (6) 관련 상위계획 검토
- (7) 관련법규 검토
 -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법규를 검토 분석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검토·분석 및 제시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 등 환경관련법규
 - 기타 관련 법규
- (8) 기타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자료

나. 현황 조사

- (1) 본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관련자료는 사업예정부지 및 인접지역에서 시행된 기존자료를 활용한다.
 - 지형현황측량 : 사업예정부지를 대상으로 기시행한 현황측량 자료 활용
 - 토질조사 : 사업예정부지 인접지역에서 기시행한 “북서울 꿈의 숲

- 조성공사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2008. 10)”상 토질조사 자료 활용
- (2) 현재 운영 중인 오현적환장의 현황 조사
- 현재 운영중인 오현적환장의 시설규모,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 시설 계획시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오현적환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시 오현적환장이 도시계획시설임을 뒷받침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후 적환시설이 사업부지에 입지 가능하여야 한다.
- (3) 국내 타지자체의 유사시설 현황 조사
- 국내 타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유사시설의 견학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역의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 처리현황 및 예측
- 사업대상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 폐기물 관리 관련조직, 장비 및 인력, 예산현황

라. 사업부지의 입지 분석

- 위치, 면적, 지목,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계획
- 입지여건(토지소유 및 용도구역, 지형, 지질, 지하수, 하천 등과의 관계)
 - 사업부지(지상 및 지하)의 점용·사용권에 관한 사항 고려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
-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 민원관계
- 폐기물 운반도로 등 폐기물 수집 운반관계
-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시설과의 연계
 - 비오톱1등급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환시설의 입지 고려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
- 관련법규 저촉 및 사업부지 적정성 검토
- 종합 평가

※ 참고 : 현 오현적환장 소재 토지 정보

- 소유권 : 서울특별시(시유지)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공원(도시계획시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 그 외 법령 : 비오톱1등급(오현적환장 인접 토지), 과밀억제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

마. 처리시스템 검토 및 처리시설 규모 산정

- 적환장 현황 및 계획, 강북구 관내 이전할 기타 시설물 계획 등을 고려한 도입시설 종류 설정
- 도입시설 종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예측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시설규모 설정

바. 기본계획 수립

(1) 시설구조계획 수립

- 아래의 적환장 지상화 또는 지하화에 대해 검토 후 현지여건에 적합한 적환시설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
 - 적환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 ▶ 지상화의 경우 : 돛형 적환장
 - ▶ 지하화의 경우
 - 지상 주차장(청소차량 및 일반차량) / 지하 적환장
 - 지상 주차장(일반차량) / 지하 주차장(청소차량) 및 지하 적환장
 - 지상 공원 / 지하 주차장(청소차량 및 일반차량) 및 지하 적환장

(2) 시설배치계획 수립

- 위 “시설구조계획 수립”에서 결정된 적환시설의 지상화 및 지하화에 적합한 주요 시설별(건축, 시설 등) 배치계획 수립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결과, 시설규모 및 특성, 도입시설간 상호 연계성, 강북구 관내 이전할 기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설배치계획 수립

- 주변 환경 및 시설물과의 조화, 동선계획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법 기준에 충실한 계획 시설배치계획 수립
- (3) 시설계획 수립
- 주요 시설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장) 합리적, 경제적인 기본계획 수립
 - 토목 : 부지조성계획 / 진입도로계획 / 우수배제계획 / 오·폐수 처리 계획 / 상수 공급계획 등
 - 건축 : 시설 층별 배치 및 면적 등 건축계획 / 건축 구조 계획 / 냉·난방 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건축기계설비계획 등
 - 기계 : 폐기물처리 대상량 산정 / 폐기물처리 계통도 / 폐기물처리 설비(기기) 비교 분석 / 폐기물처리설비 설치 계획 / 악취 처리설비·세차설비·폐수처리설비 등에 대한 설치 계획 등
 - 전기·계장 : 전기설비 계획 / 건축전기설비 계획 / 감시제어 계획 등
 - 위 “시설구조계획 수립”에서 결정된 적환시설에 적합한 지상 및 지하 주차장 조성계획
 - 전체 조경개념 및 지역적 특성과 환경 및 완충기능을 고려한 조경계획 수립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에 대한 용량 추정 및 공급방안 수립
- (4) 동선계획 수립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합리적, 효율적인 동선계획 수립
 - 부지내·외부의 연계, 주차 및 교차로의 효율적 처리방안 수립
 - 부지내 도로계획 수립
- (5)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설계를 위한 충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사.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 (1) 본 시설 설치에 따른 개략공사비 및 자원조달계획, 유지관리비를 산정 제시한다.

(2) 본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방안 및 조직 등을 검토 제시한다.

- 운영관리 조직체계
- 운영관리방안 수립(적환장)
 - 운영인원 및 장비 계획
 - 시설물별 유지관리 계획
 - 비상시 대책
- 운영관리방안 수립(주차장)
 - 운영 주체(서울시 및 강북구)에 따라 직영 및 위탁운영 시 운영 관리방안
 - 주차장 조성 시 주차장 기초자치단체별 예상 이용객 및 예상 수익

※ 참고 : 현 오현적환장 소재 토지 정보

- 소유권 : 서울특별시(시유지)

아. 공사 중 현 적환장의 안정적 운영방안 검토

- 본 시설의 공사기간 중 현재 운영 중인 적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공 및 운영방안 검토

자. 사업 추진방식 검토 및 경제성 분석

(1) 사업 추진방식 검토

- 사업추진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한다.

(2) 경제성 분석

- 본 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다.
- 사업추진방식(재정사업, 민간투자방식 등)에 따른 단계별, 연차별 투자 계획 수립

차. 기타 필요한 사항

- 투자심사 시 관련 서류 작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수행

2. 도시계획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

-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중복결정 등 본 사업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공원조성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과정 중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시·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 본 용역 준공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 본 청소업무시설 지하화 조성사업 시행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중복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른 도서 작성을 기본 업무로 한다.

(1) 계획 검토

- 관련법규 검토 : 도시계획시설 변경(중복결정)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법 검토
- 관련계획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2) 도시계획시설 변경도서 작성

- 설치목적이나 사유 및 내용 작성
 - 도입시설 구성에 따른 효과, 사유 또는 목적을 상세히 명기
- 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 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 세부시설계획 작성
 - 시설배치계획 및 건축물 내역

- 위치도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작성
 - 1/25,000 위치도
 - 1/5,000 도시계획시설 현황도 작성
- 개발계획도
 - 지적도 등본상에 공공시설입지 범위를 적색선으로 구획하고 지적선, 지목, 지번 등의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
- 토지조서
 - 총괄표 및 세부 조서로 구분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 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로 구분 기재

나. 환경성 검토

- 환경성검토는 사업지구의 주변 환경과 기초자료 및 실측자료를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파괴의 예방,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반 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성 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관련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으로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그 내용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 검토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변화될 환경상의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세부 지침

- 사업개요 파악
-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공사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평가 요인을 파악한다.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인문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며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 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 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

도를 숫자, 부호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확실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정리하여야 한다.

○ 대안 설정 및 평가

- 일정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 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 기 타

- 평가서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부록에는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한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1) 과업의 내용

- 작업계획 수립
- 계획의 개요
 - 계획배경 및 목적
 - 계획추진절차 및 계획내용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관련계획 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 기상 및 수문조사
 -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관리 현황조사
 - 재해발생 현황조사
- 재해영향예측 및 예상재해저감대책 수립
 - 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 방재계획 수립 및 재해경감대책 제시
 - 향후 이행 및 관리방안 수립
- 검토항목 작성
 - 공통사항 검토항목
 -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 협의대상유형별 검토항목
 - 추가검토항목
- 결론
- 검토서 작성
- (2) 세부과업내용**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천현황, 지형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 대상지역은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설정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

○ 관련계획 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으로 국가 및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조사
- ▶ 관련계획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개수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배수펌프장 신설 및 증설계획 등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 ▶ 토지이용현황은 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통계연보, 위성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 및 추세 분석

○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 ▶ 유역특성조사는 유역의 강우-유출관계, 유출특성의 추정과 관련된 기하학적 특성 등을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조사
- ▶ 대상유역내 배수체계를 조사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제시

- 기상 및 수문조사

- ▶ 기상 및 수문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에 관한 관측자료 수집
- ▶ 과거 주요 풍수해 발생시 기상특성, 강우량 및 유출량 조사
- ▶ 지형 및 지질특성조사 : 대상지역의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기초하여 등고선 표시
- ▶ 1/25,000 또는 1/50,000 축척으로 상세 지질도를 작성하거나 대상지역에 기존 지질도가 있을 경우 활용

-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관리 현황조사

- ▶ 대상지역내 방재시설의 위치, 규모, 운영주체, 관리상태 등 조사

- ▶ 대상지역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현황 조사
- ▶ 현지조사시 시설물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재해발생 현황조사
 - ▶ 재해발생 현황조사는 문헌,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술
 - ▶ 과거 풍수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
 - ▶ 주요 풍수해 발생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풍수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
 - ▶ 풍수해 발생시 작성한 재해대장을 통하여 시설물별 피해원인과 침수원인 등 풍수해 원인 조사
 - ▶ 대상지역의 침수흔적도가 있는 경우 이를 도면화하여 수록
- 재해영향예측 및 예상재해저감대책 수립
 - 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 ▶ 계획에 따른 대상지역에 대한 재해 관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분석
 - 방재계획 수립 및 재해경감대책 제시
 - ▶ 계획으로 인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기술
 - ▶ 재해영향성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적절한 재해경감 대책 제시, 재해경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
 - ▶ 하천재해의 경우, 홍수범람이 예상되는 지역은 배후지역의 특성, 지역의 중요도, 보호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방축조 또는 저류지 계획을, 홍수방어에 불충분하거나 치수적 안정성이 부족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
 - ▶ 내수침수의 경우, 하수관거 개량 및 신설, 배수펌프장 설치, 고지 배수로 설치 등과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구역은 도시개발 또는 재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내수 침수피해 해소대책과 토지이용규제계획 등을 제시
 - ▶ 산사태 및 축대 붕괴위험지구에 대하여 적절한 사면보강대책 제시

- ▶ 토사유출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침사지 설치계획을, 홍수유출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류지 설치계획 수립
- ▶ 풍해위험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에 대한 내풍 설계기준 검토 및 보완
- ▶ 시설물재해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물의 치수능력 증대방안 검토
- 향후 이행 및 관리방안 수립
- ▶ 대상지역내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발계획수립의 타당성 검토
- ▶ 사업지구 입지에 대한 방재안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점 및 대안 도출
- 검토항목 작성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2012. 10)에 의거 공통사항, 입지유형별, 협의대상유형별 검토내용 작성
- 결 론
 - 재해영향을 제거 및 예방할 수 있는 최적안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제시
- 검토서 작성
 - 검토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2012. 10) 및 표준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라. 교통성 검토

- 교통성 검토는 강북구 오현적환장 지화화 등 조성에 따른 교통성을 분석하고 장래의 교통여건의 변화에 원활한 대응방안 수립하여 개발에 따른 교통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하기 위함이다.

(1) 주요 과업내용

- 서 론
- 교통환경조사 분석
-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도출

- 개선방안 도출 및 효과 분석, 개선안 시행계획 제시
- 보고서 작성

(2)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교통성 검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통성 검토서 제출에 따라 필요한 각종 자료 및 평가 완료 후 또는 우리시 필요시 관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교통성 검토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 서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
 - 교통영향요인 분석
 - ▶ 공사중 및 본 사업완료시의 각 단계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 파악
 - 평가방법 설정
 -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사회·경제 여건에 있어서의 교통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
 - 조사계획 수립
 - ▶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 교통환경조사 분석
 - 범위 설정
 -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서 주요 간선도로 및 사업지역 주변의 주요도로 등을 포함한 지역으로 설정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 공간적 범위에 속하는 지역의 교통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

- 조사항목

▶ 토지이용 실태

- 조사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분류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분석

▶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 조사지역 가로망의 교통시설물 현황
- 교통운영현황
 -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 수준
 - 가로구간 속도 및 지체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대중 교통운행(마을버스 포함) 및 보행현황

▶ 유사시설 조사(원단위 조사)

○ 장래 교통수요 예측

-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를 사업완료후 1년, 5년, 10년에 대하여 예측·분석

-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로 구분 시행

▶ 주차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교통개선방안 및 효과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도출

-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구분하여 검토

▶ 본 사업지역에 대한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 ▶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서비스 수준 변화
 - ▶ 가로 및 교차로, 교통안전 및 기타 소통상의 문제점
 - ▶ 본 사업 완료에 따른 주변도로에 미치는 교통 문제점
 - ▶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문제점
 - ▶ 주차시설의 문제점
- 개선방안 도출 및 효과 분석, 개선안 시행계획 제시
- 위 라)항에서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도로신설 및 정비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포함되는 교통관리대책을 수립 및 제시
 - 개선방안 수립시에는 사업지내와 주변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필요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효과 분석
 -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도로에 미치는 교통문제의 극복방안 제시
 - 개선대책 수립 후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적용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 평가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필요시 첨부
 - 교통성 검토 보고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보고서 각 항목과 주요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마. 경관성 검토

(1) 일반지침

- 본 시설부지의 경관성 및 정체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행한다.
 -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경관현황조사·분석
 - 경관계획 기본구상
 -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전략

(2) 세부지침

- 경관현황 조사·분석

-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이용상황 및 기타사항의 조사
- 경관관련 상위 및 관련계획 조사 분석
- 경관종합 분석 및 과제 도출
 - 경관구조분석
 - 보전 및 개선대상의 선정
 - 경관 문제 및 잠재력 분석
- 경관기본구상
 - 경관목표 및 방향 설정
 - 지구 경관체계 구상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
- 부문별 경관계획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건축물 경관계획
 - 가로경관계획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계획
 - 색채경관계획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도시계획안 주민의견 열람 및 공고
- 나. 시·구 의회의견 청취
- 다.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 라.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마. 서울시 결정 요청(시의회 의견청취, 심사)
- 바.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자료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인쇄 전에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연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입안자료 [열람공고, 시·구의회 의견청취,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서울시 결정 요청 자료 등]는 조사 시기, 방법, 대상규모,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리·보고한다.
- 인용 자료 등 관련자료는 출처 및 근거, 연도를 수록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	A4	50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도서	식	1	
조감도	식	1	
성과품 CD	식	1	